



의안번호	제 2016 - 12호
보 고 연 월 일	2016. 4. 18. (제7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01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제102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2
III.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2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2
2. 양형기준 적용범위	4
3.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6
4. 양형인자	9
IV.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11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11
2. 양형기준 적용범위	12
3.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2
4. 양형인자	13
V.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13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13
2. 형량범위	13
3. 양형인자	14
VI. 향후일정	18

<별첨자료>

안종열, “절도·장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Ⅱ”

김현아, “절도·장물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Ⅱ”

이 용,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검토”

황병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안종열, “절도·장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Ⅳ-양형인자”

김현아, “절도·장물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검토Ⅲ”

이 용,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수정 추가 검토”



I. 제101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6. 4. 4.(월) 10:00 ~ 13: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박수정, 박지선, 범현, 안종열, 이용, 이진국,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절도범죄, 장물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II. 제102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6. 4. 11.(월) 14:00 ~ 16: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수정, 범현, 안종열, 이용,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절도범죄, 장물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Ⅲ.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가. 개요

- 현행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절도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4 제1항 중 일부와 제6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2016. 1. 6.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고, 제2항, 제5항, 제6항의 구성요건이 일부 변경되거나 법정형이 변경되었음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1)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개정 전	개정 후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 제9조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임산물(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	② 삭제 <2016.1.6>

개정 전	개정 후
·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벌칙)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6.22]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의견 일치된 부분

(1) 형법 제332조(상습절도)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므로, 형법 제332조(상습절도)를 설정 대상범죄에 추가
- 다만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가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역시 제331조의2를 제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329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만을 대상으로 함

1) 제73조 제3항이 추가됨.

제73조(벌칙)

-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립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贓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임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제9조 제2항(삭제) ☞ 제외

(3)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은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에서 가중처벌하던 조항으로서 원래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었음

(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 포함

- ‘송유관 내 석유 절도’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었음

나.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리

- 양형기준 수정 후 적용범위는 아래 표의 음영 표시 부분과 같음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절도	형법 §329	6년 이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330	10년 이하	
특수절도	형법 §331	1년 이상 10년 이하	
상습범	형법 §332(§329, 330, 331)	2분의 1 가중 (9년, 15년 이하, 1년6월 이상 15년 이하)	설정 대상 추가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 §5의4 ①	무기 또는 3년 이상 ⇒ 삭제	설정대상 제외
공동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 §5의4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 ⇒ 2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변경
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5의4 ⑤, ①	무기 또는 3년 이상 ⇒ 2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변경
공동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5의4 ⑤,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 ⇒ 삭제	설정대상 제외
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5의4 ⑥, ①	무기 또는 6년 이상 ⇒ 3년 이상 25년 이하	법정형 변경
공동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5의4 ⑥, ②	무기 또는 10년 이상 ⇒ 3년 이상 25년 이하	법정형 변경
임산물절도	산림자원법 §73 ①	7년 이하	
임산물절도	산림자원법 §73 ③	1년 이상 10년 이하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송유관절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13의2 ①	2년 이상 10년 이하	설정 대상 추가
보호수등 절도	산림보호법 §54 ①	1년 이상 10년 이하	
임산물절도	특정범죄가중법 §9 ① (i)	무기 또는 5년 이상 ⇒ 3년 이상 25년 이하	법정형 변경
임산물절도	특정범죄가중법 §9 ① (ii)	3년 이상 ⇒ 2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변경
임산물절도	특정범죄가중법 §9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 ⇒ 삭제	설정대상 제외
지정산림문화자산절도	산림휴양법 §35 ②	1년 이상 10년 이하	
국가지정문화재절도	문화재보호법 §92 ①	3년 이상	
지정문화재절도	문화재보호법 §92 ②	2년 이상	

3.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대유형에서 제외할지 여부

(1) 다수의견(7인) ⇨ **현행과 같이 대유형으로 유지**

-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의 유형 삭제는 신중할 필요 있음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권고형량범위, 실제 형량분포의 차별성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 인정됨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45건 가량 선고 ⇨ 5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의 일부 유형에 비해 결코 사건 수가 적다고 볼 수 없음
-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절도(2년 이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절도(3년 이상)의 법정형이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차이가 큼 ⇨ 특별가중인자 설정만으로 적정한 형량범위 제시 못함
- 임산물 절도, 송유관 절도 등 ⇨ 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그 경우 적정형량범위 제시 어려움
- 상습·누범 절도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 것은 법정형 및 권고형량범위 유사성 감안한 것임

(2) 소수의견(3인) ⇨ 대유형에서 제외, 특별가중인자로 포함

- 절도범죄군의 2014년 선고내역(양형기준 적용현황 2014년)에 의하면, 02유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단 0.6%에 불과함
- 이 정도 빈도에 불과한 유형이라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형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양형인자로 반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상습·누범 절도 유형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음

나. 상습범

(1) 다수의견(6인) :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가) 양형기준 전체 체계상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범죄군
 - 강도, 폭력, 공갈, 손괴 ⇨ 특가법, 폭처법 등 특별법상 상습범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
- 나머지 범죄군에서는 상습범을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나) 상습범 엄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 감안

- 특가법 5조의4 제1항을 삭제한 입법취지 반영
-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던 구 특가법 5조의4 제1항을 삭제하면서 별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음
- 형법 332조 ⇨ 구 특가법 5조의4 제1항과 법정형 차이 매우 큼

(다) 상습범 폐지론에 관한 형사법학계 의견 등

-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형사정책학적 근거가 약하고, 개념의 불명확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학계 주장 있음

(2) 소수의견(3인) :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가) 관례상 발생 빈도가 다수인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으로 삼고, 유형분류에도 반영해 왔음

(나) 상습절도는 빈발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 차별성이

있음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 의하면, 상습·누범절도가 전체 절도 범죄군의 29.2%를 차지하고 있음(그중 대부분이 상습절도로 추정됨)

- 반면, 사기죄의 경우 상습사기는 사기죄에 비하여 극히 적은 사건수에 불과하여 별도의 유형분류 필요성이 적은 것과 대비됨

(다) 특가법(절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선고형 분포 검토 결과, 현행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의 가중영역(6월에서 4년)만으로는 일반 절도와는 차별되는 분포 현황을 보임[2015. 2. 26.부터 2015. 11. 30.까지]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월)
	4	6	8	10	12	14	18	24	30	36	42	48	54	60	72		
수	6	19	31	52	122	29	168	168	51	60	13	13	2	5	1	763	20.26
비율	0.79	2.49	4.06	6.81	15.99	3.80	22.02	22.02	6.68	7.86	1.70	1.70	0.26	0.65	0.13	100	

(3) 의견 보류(1인)

다. 침입절도의 감경영역 하한 하향 조정

(1) 다수의견(7인) : 현행 유지

- 침입절도의 위험성을 규범적으로 반영한 권고형량 범위임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소수의견(3인) : 8월 ⇨ 6월

- 침입절도의 2014년 적용현황 분석결과 : 전체사건 1,763건 중 특별감경인자인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가 적용된 사건이 1,041건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행위의 위험성, 주거의 평온 훼손의 정도가 현저히 낮음

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형량범위

- 다음과 같이 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법정형이 각각 '2년 이상'(소유형 1), '3년 이상'(소유형 2)인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

- 다만, 기본영역의 하한이 법정형 하한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 설계의 원칙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전체적인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 있었음(1인)

마. 법정형 변경을 반영한 유형 분류 조정[의견일치]

-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개정된 범죄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 ⇨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 유형 이동
 -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2호(2년 이상 20년 이하)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2년 이상 10년 이하)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서술식 양형기준 삭제[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2유형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정형 변경 : 무기 또는 5년 이상 ⇨ 3년 이상 25년 이하) : 소유형 2에 포섭됨
-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 ⇨ 삭제됨

4. 양형인자

가. 의견 일치

- (1)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상습범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기존 상습·누범절도에 있던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하는 다수의견에 따라 위 인자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추가

- 다만,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기존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와 중복 적용 여지 있음 ⇨ 상습범인 경우와 상습범이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 추가하는 위 인자는 상습범의 경우에만 적용함

(2) 특정범죄가중범상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기존 상습·누범절도의 경우에 있던 인자임
- 다만, 대유형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로 정리

나. 의견 불일치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 여부

-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위 논의와 같음

(2)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는 3유형(대인절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할 것인지 여부

(가)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

- '흉기를 휴대한 경우'의 가벌성이 확연히 부각되는 유형은 침입절도 유형임
-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 '흉기를 휴대한 경우'가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나) 소수의견(5인) : ‘흥기를 휴대한 경우’를 3유형(대인절도)에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흥기를 휴대한 경우’는 대인절도 유형에서도 위험성이 높아 행위불법이 큼

IV.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가. 개요

- 현행 장물범죄 양형기준은 2015. 2. 2. 의결되고, 2015. 6. 8. 수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상습장물 관련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2016. 1. 6. 특가법 개정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형법 제363조(상습장물)를 기준으로 상습장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 있음

나. 법률 개정 내용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2016.1.6>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형법 제363조(상습장물) ☞ 포함

-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따라 삭제되었으므로, 형법 제363조(상습장물)를 설정 대상범죄에 추가함

나.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삭제) ☞ 제외

다.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리

- 양형기준 수정 후 대상범죄는 아래 표의 음영 표시 부분과 같음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절도	형법 §362	7년 이하	
상습범	형법 §363	1년 이상 10년 이하	설정 대상 추가
누범장물	특가법 §5의4 ⑤, ③	무기 또는 3년 이상 ⇒ 2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변경
문화재장물	문화재보호법 §92 ③ (ii), (iii)	2년 이상	

3.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가.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설정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

- 절도범죄 논의와 같음

나. 상습범

- 절도범죄 논의와 같음

다. 누범장물 형량범위

-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누범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 법정형 '2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

- 다만, 기본영역의 하한이 법정형 하한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 설계의 원칙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전체적인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 있었음(1인)

4. 양형인자

(1) 일반장물 유형에서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 여부

-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논의 와 같음

V.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현행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공소제기 기준 및 선고형량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2. 형량범위

-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

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상한을 '1년6월'로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6월	1년 - 4년

- 기존 선고형 분포 ⇨ 기본영역에서 1년6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
-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범죄군의 기본영역 상한과의 균형을

감안함(사행성·게임물범죄, 마약범죄)

나. 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의 상한을 '7년'으로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7년

- 가중영역의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위불법, 결과불법이 매우 큰 사안에 있어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양형인자

가. 의견 일치

(1) 대유형 1.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수정

-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비되는 특별감경인자 필요

- 결과불법이 경미한 경우를 양형에 반영함

(2) 대유형 1~3 특별감경인자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삭제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수정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특별감경인자) ⇨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공무집행이 부적법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수정하여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준하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함

- 특별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신설하는 것과의 균형을 아울러 고려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대유형 1~3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특별가증인자로 추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거워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대유형 1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특별가증인자 정의 규정 추가(밑줄 친 부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 만취상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범죄, 성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등에 규정된 서술식 양형기준을 반영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의견 불일치

- (1) 대유형 1~3 특별가중인자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수정 여부

(가) 다수의견(6인)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경우(예 : 2인이 범행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만큼 가벌성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소수의견(5인)

- 사실상 적용이 거의 없는 특별가중인자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대신하여 위 인자의 설정 필요성 있음
- 주동자에 대한 행위불법의 차별성 있음

- (2) 대유형 1~3 :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추가 여

부

(가) 다수의견(8인)

- 복면 착용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나 결과에 있어서 중대한 비난요소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
- 집회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 있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외국 입법례는 입법 과정에 찬반 의견이 있는 우리 실정에서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움)
-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복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정의에 이미 포섭될 수 있는 내용임

(나) 소수의견(3인)

- 외국 입법례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복면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거나 양형인자로 가중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됨
- 복면 등 착용한 범행은 신원을 숨기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3) 대유형 1~3 : ‘신원확인을 회피할 목적의 마스크, 복면 등’ 착용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의 정의에 추가할지 여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을 회피할 목적의 마스크, 복면 등 착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가) 찬성의견(5인)

- 위 (2)항의 소수의견 논거와 같음

(나) 반대의견(5인)

- 위 (2)항의 다수의견 논거와 같음

(다) 의견 보류(1인)

VI.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 검토 등
- 일시 및 장소 : 미정